

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

□ 개정 · 공포

- 법률 제17185호(2020. 3.31 공포)

※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

□ 주요내용

- (1)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(제61조제1항, 제2항)

- 1차 사용촉진(3개월 전) → 2차 사용촉진(1개월 전)

- (2)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(제60조제7항)

-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(입사일부터 1년간)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, 사업주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(연차수당 지급) 의무 면제

<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(1.1. 입사자 기준) >

		<1차 사용촉진> (사용자→ 근로자)	(근로자→ 사용자)	<2차 사용촉진> (사용자→ 근로자)
		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·통보 요구	사용시기 지정·통보	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·통보
1년 이상 근무자 <small>* 법개정에 따라 80% 미만 출근자도 포함</small>		7.1-7.10 (6개월 전, 10일간)	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	10.31까지 (2개월 전)
1년 미만 근무자	연차휴가 9일	10.1-10.10 (3개월 전, 10일간)	10일 이내	11.31까지 (1개월 전)
	연차휴가 2일	12.1-12.5 (1개월 전, 5일간)	10일 이내	12.21까지 (10일 전)

※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 부여, **최대 11일 발생**